

평창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

1. 회 부 경 위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출자 : 2003. 12. 9(화) 평창군수(기획감사실장)
- 나. 회부일자 : 2003. 12. 19(금)
- 다. 상정일자 : 제108회 평창군의회 정례회
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(2003.12. 22)상정 ·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(기획감사실장 권순철)

가. 제안이유

- 지방재정법 제3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재정투·융자심사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평창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민간인 위원구성을 과반수로 확대하기 위하여 관계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.

나. 주요골자

- 위촉직 위원인 민간인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당연직 위원인 공무원 위원수를 현재 7명에서 5명으로 줄임(안 제2조)

1. 당연직 위원 : 농업기술센터소장, 재무과장, 환경복지과장, 건설과장
지역도시과장

※ 자치행정과장, 문화관광과장, 임업경영과장은 삭제하고
농업기술센터소장은 신설.

4.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의 요지 (전문위원 : 박태영)

- 본 조례안은 2004년도 지방재정계획수립 및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지침에 의거하여
 - 지방재정계획심사위원회 및 투·융자심사위원회 구성시 민간인의 구성율을 1/2이상 참여토록 하여 심사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여 자칫 관위주의 운영에 빠질 수 있는 문제점을 보완하여 형평성있는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.
- 주요변경 내용을 살펴보면,
 - 기구개편시 변경된 “기획실장”을 “기획감사실장”으로 수정하고,
 - 운영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당연직위원의 수를 7명에서 5명으로 변경하였습니다.
- ★ 현재 당연직위원 : 자치행정과장, 재무과장, 문화관광과장, 환경복지과장
임업경영과장, 건설과장, 도시경제과장
- ★ 변경 후 당연직위원 : 농업기술센터소장, 재무과장, 환경복지과장, 건설과장
지역도시과장

- 검토 결과 법령이나 기타 자구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없 음

5. 심 사 결 과 : 원안의결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 음